제23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2018.1.17.)

조례일반의안 심사 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민간위탁 동의안 -	3
3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5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_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8. 1. 4.

나. 제 출 자: 거 창 군 수

다. 회부일자: 2018. 1. 9.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8. 1. 16.

2. 개정이유

O 거함산 항노화 약용식물 상품화 지원사업인 거창약초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약초 및 항노화 제품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령 재기재 사항 삭제함.(안 제8조제1항 후단)
 - 삭제: 위촉 위원의 특정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근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 나. 수당규정 삭제함.(안 제12조)
 - 위원회 출석수당 지급근거: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 다. 거창약초유통센터 규정 신설함.(안 제12조~제14조)

- 설치 및 위치: 약초 및 항노화 제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거창읍 거함대로 3372 일원에 설치
- 기능: 약초의 순회수집·집하·선별·소분·전처리 및 저장, 약초와 항노화 제품의 전시·판매 및 마케팅, 항노화 제품 개발
- 위탁: 약초센터의 전문적·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근거마련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조례안은 '17년 12월 준공한 『거창약초유통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O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없음
- 7. 수정안 요지: 없음
- 8. 심사결과: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 - 심 사 보 고 서 _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8. 1. 4.

나. 제 출 자: 거 창 군 수

다. 회부일자: 2018. 1. 9.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8. 1. 16.

2.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안전점검능력(전문적인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옥외광고물로 인한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옥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하기 위함.

3. 위탁개요

- 가. 대상사무: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 나.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 옥상간판·돌출간판·벽면이용간판·지주이용간판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교통시설이용 광고물·현수막 지정게시시설
 -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 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 위 광고물들의 게시시설

다. 위탁기간: 3년(2018. 3. 23. ~ 2021. 3. 22.)

라.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마. 소요예산: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을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안전점검능력(전문적인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옥외광고물로 인한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를 3년간 민간 위탁함에 따른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없음
- 7. 수정안 요지: 없음
- 8. 심사결과: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8. 1. 4.

나. 제 출 자: 거 창 군 수

다. 회부일자: 2018. 1. 9.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8. 1. 16.

2. 제안이유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 실시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게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기 위함.

3. 위탁개요

- 가. 대상사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 나. 교육의 종류
 - 신규교육(연간 6시간)
 - 보수교육(연간 3시간)
 - 행정처분 대상자(3시간)
- 다. 교육비용: 피교육자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가 납부
 - 피교육생 1인당 30,000원 부담(자비)

- 라. 위탁기간: 3년(2018. 3. 23. ~ 2021. 3. 22.)
- 위탁기간 만료 시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바.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사. 소요예산: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를 선정, 체계적인 교육 실시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소양 함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를 3년간 민간위탁함에 따른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없음
- 7. 수정안 요지: 없음
- 8. 심사결과: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